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8. 25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8.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8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9. 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진영표)

폐지이유

○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 1. 28 공포, 법률 제6236호)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 우리 시도 상위법과 연계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71호
의결년월일	2000. 9. 5 (제80회)

제출년월일 : 2000. 8. 25

제출자 : 부천시장

□ 폐지이유

○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2000. 1. 28 공포, 법률 제6236호)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 우리 시도 상위법과 연계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첨 부

○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 [1995. 1. 14
조례 제1321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개업소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이 된다.

제9조(조사)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의결내용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부천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 1. 14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